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17

발의연월일: 2022. 8. 25.

발 의 자:김영식·권성동·박성중

박대수 · 지성호 · 정우택

성일종 · 서일준 · 김용판

노용호 • 윤재옥 의원

(119]

제안이유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 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 음.

이에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NSF(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 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 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상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

례 등을 부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 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사.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효율적 연계 및 육성을 위한 지역기 술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자.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연구사업의 보안 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31조).
-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 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국가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여야 한다.

- ③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 종합·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확 산 등에 관한 사항

-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변경하여야 한다.
 -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 업에 관한 기본계획
 -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 11. 그 밖의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내 경제효과 및 연관 산업 기여도
 -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 3. 산업혁신 잠재력 및 사회적 파급효과
 - 4. 국가전략기술로의 선정 및 육성의 시급성과 시의성
 - 5.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해

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술육성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또는 기술육성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 및 해제 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 원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

- 을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 2. 국내외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
- 4.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 5.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 6.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전략 수립ㆍ이행 지원
- 7.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

- 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 구축 여부
-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관 전략연구사업을 수 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 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 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면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성과점검 총괄기관의 지정·운영)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 추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하는 기관(이하 "성과점검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전략연구과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중 제1항에 따라 성과점검총괄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성과점검 총괄기관의총괄 점검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점검 총괄기관은 기술육성주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성과점검 총괄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성과확산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출자금

- 2. 제1호 외의 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3. 그 밖의 부대수입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연계·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
- ⑧ 특허청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 2.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 ⑨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및 제6항에 따른 전담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술료의 징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략연구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 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제16조(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 등에서 생산·확보된 지식·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 중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술육성주체 등에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현황,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술육 성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 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주 기적으로 분석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으로 개발된 국가전략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서비스의 확산 등을 촉진하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 2. 국가전략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 ② 정부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 성과물의 실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 국제표준의 인증·검증,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테스트 베드"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이전·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보급 · 확산
 -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 표준 기구 활동 지원
 -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제20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 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5. 그 밖의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

-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 2.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및 협력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업공동연구소)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이하 "공동연구소"라 한다)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 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③ 그 밖에 공동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국내외 기술육성주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선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 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 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연계 강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술 및 산업 육성계획(이하 "지역기술육성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역기술육성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지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 조제2항에 따른 지역기술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이 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기 술혁신허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 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8.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 협력
-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 술개발
-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 ④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지원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국 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관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 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 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사용료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 제27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을 우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인력양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력양성에 기여한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2.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 3.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4. 국가전략기술 인력 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개발
- 5. 국가전략기술 인력 경력개발 지원
- 6.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 7.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전략기술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은 국가전략기술의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교육 연구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할 수 있다.
- 제29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3. 그 밖의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교육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교육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특화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및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 2. 이민 절차의 완화
 -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 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31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

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알려야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에관한 항목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보안대책의 실행에 필요 한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국 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 는 기술육성주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보안 항목 별도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안보분야 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 술의 확보를 위하여 협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성과물이 신속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연구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국방전략기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국방 전략기술 활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국방전략기술 활용계획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략연구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물자에 대하여 가점 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 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제협력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국제공동연구 지원) ① 정부는 제33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국제공동연구

-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 련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

감독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략연구사업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 연구사업의 지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